

【 공 고 】

2022년 지부집단교섭 의견접근안

찬반투표 총회

지부 규정 제10조, 제11조, 제34조에 의거
2022년 지부집단교섭 의견접근안에 대한 조합
원 찬반투표 총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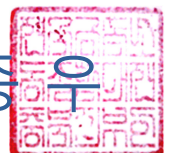
~ 10월 27일(목) 17:00

□ 장소 : 각 사업장 지정된 장소

2022년 10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박 종우



[2022년 지부집단교섭 의견접근안]

1. 2022년 임금인상

: 사업장에서 논의 후 제출

2. 산업전환대응

○ 산업전환협약 관련 각 사의 기존 합의안에 아래 문구를 추가한다.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조합과 논의 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3. 위험성평가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 분회)과 공동으로 연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 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 정년퇴직자가 마지막 근무년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그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 시 회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관행상 그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행을 따른다.

5. 재정자립기금

① 회사는 2022년부터 조합원 1인당 월 3,900원을 재정자립기금으로 지급하되, 지부집단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총 사업장 조합원 수의 기준금액을 내부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② 재정자립기금은 대전충북지부로 납부하고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노사협의로 분기 또는 일시납을 할 수 있다.

③ 조합원 수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협의(지부, 지회)를 통하여 납부하는 직전 월 또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